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1나1051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1. 14 선고 2021나1051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673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일명 J)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김기동, 이재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승전

담당변호사 한필전

변론 종결 2021. 11. 26.

판결 선고 2022. 1. 14.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22. 선고 2019가합673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K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673,773,621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19.부터,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8. 19.부터, 9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93,661,42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367,122,670원 및 그중 69,9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95,454,6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367,122,670원 및 그중 69,92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295,454,67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라. 원고 F에게 122,068,751원 및 그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98,206,7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마. 원고 G에게 122,068,751원 및 그중 2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98,206,75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바. 원고 I에게 490,107,838원 및 그중 93,280,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394,495,838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사. 원고 D에게 998,747,340원, 원고 E에게 393,661,421원, 원고 H에게 437,829,1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에서 원고들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K에 대하여 주식 매매잔금 지급청구를, 원고 W, B, C,
 F, G, I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K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를, 원고 D, H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K에 대하여 단기차입금 지급 청구를 각각 하였다. 제1심은 제1심 공동피고 K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단기차입금 지급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에 대한 주식 매매잔금 지급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식 매매잔금 지급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나.2)(가)항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원인자분담금 부분'(제1심판결 제18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전용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분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8호증의 기재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우발채무로 전용부담금 2,954,430,120원이 발생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그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회사는 V 회계법인에 이 사건 회사의 부채에 관한 회계실사를 의뢰하였고, V 회계법인은 2019. 8. 2. 실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실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회사가 골프장 및 유스호스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 59필지 중 18필지의 지목이 체육시설 등이 아닌 농지 등(답, 목, 임, 전)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와 같이 지목이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되지 않은 토지에 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이하 '전용부담금'이라 한다)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1,197,143,000원이다. 또한 지목이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된 토지에 관하여도 전용부담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이 1,757,287,350원이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금액의 합계액이 피고가 주장하는 2,954,430,120원(= 1,197,143,000원 + 1,757,287,350원)이기는 하다.

② 그러나 위 실사보고서는 내용 자체로 전용부담금이 부과되어 현재 미납금이 2,954,430,120원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용부담금 부과 및 납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기록상 이 사건 회사가 미납한 전용부담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③ 특히 지목이 체육시설 등으로 변경된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회사로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이 경우 위 법률상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골프장을 건축한 다음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쳤을 것인바, 그 과정에서 전용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거나 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④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제7조 및 별첨4에 따라 '인허가', '법령준수', '재산' 등에 관하여 진술 및 보장을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현황이 사실과 달랐고 그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들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소유의 토지 지목이 체육시설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진술 및 보장조항 위배라고 볼 근거가 없고, 피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⑤ 한편 피고는 2021. 10. 27. 원주시에 농지 36필지에 대한 전용허가 협의를 요청하였고, 위 36필지에는 위 실사보고서에 기재된 지목 미변경 토지 18필지 중 10필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전용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등을 기존 현황대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복합레저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원고들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견중철

판사이은상

판사김시원